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776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기간 단축 등	2

I. 개요

1.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77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29.

(3) 회 부 일 : 2025. 10.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2012년에 임시 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신종 물질의 등장 속도가 점점 빨라져 현행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임시마약류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재지정하는 형식적 절차를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기간 단축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의 최소 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임시마약류 지정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며,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근거를 삭제함(안 제5조의2제4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명칭, 군 분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7항).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u>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1개월 이상</u>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u>예고하여야</u>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	③ ----- ----- <u>다음</u> ----- ----- <u>14일</u> ----- ----- <u>예고하면서 그 기간 동안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u> -----

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4. (생략)

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전에 예고한 임시마약류(이하 “예고임시마약류”라 한다)에 대한 효력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일까지로 하며,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예고하여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신설>

-----.

이 경우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④ -----

-----한다. <단서 삭제>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변경 1개월 이전부터 공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²⁾.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지난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신종·변종 마약류가 빠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식 마약류로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2.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2. 임시마약류의 명칭

3.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의 구분

4.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

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전에 예고한 임시마약류(이하 “예고임시마약류”라 한다)에 대한 효력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달까지로 하며,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예고하여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2.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3.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무원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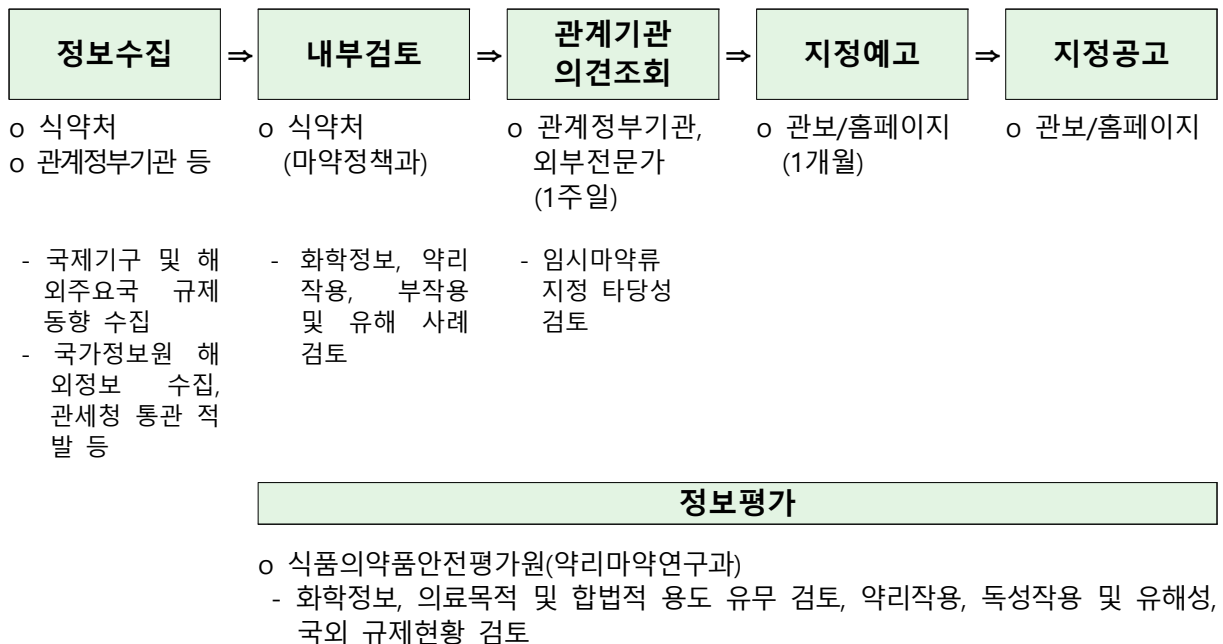
2)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은 p.14을 참조.

지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및 위해성의
구명,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³⁾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임시마약류 지정 사유 등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함.

이후 예고된 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고, 지정 사유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
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 한편, 현행법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제조·매매·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⁵⁾.

< 임시마약류 및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한 제재 규정 >

위반 행위	임시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1군	2군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법 제5조의2제5항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법 제5조의2제5항제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법 제5조의2제5항제3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법 제5조의2제5항제4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⑤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2.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3.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

□ 개정안은 임시마약류 지정의 최소 예고 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시점을 예고 이후로 변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마약류 관련 정보 입수 시 신속하게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마약류 지정기간 및 재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관련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빠르게 변이하는 신종 마약류의 등장이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보다 신속하게 신종 마약류를 규제 범위에 포섭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첫째, 안 제5조의2제3항은 임시마약류 지정에 필요한 최소 예고 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있는데, 예고 제도는 단순히 즉각적인 단속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뿐 아니라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지를 확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임시마약류 관련 금지행위 위반은 무기징역 등 최고 수준의 형벌 부과 대상인바,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계도기간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신속한 지정 필요성과 적정한 인지 기간 보장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예고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기 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⁶⁾, 안 제5조의2제3항은 예고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변경하고 있어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관계기관과의 협의 목적이 임시마약류의 지정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만으로도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 등 규제효과가 즉시 발생한다는 점, 예고된 임시마약류는 거의 예외 없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는 점⁷⁾ 등을 고려할 때, 지정의 타당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는 예고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예고 후에 관계기관 협의를 하도록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협의 결과가 지정 여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으므로, 관계기관 협의를 임시마약류 지정의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절차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임.

□ **셋째**, 안 제5조의2제3항 후단은 임시마약류 지정 시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른 1군·2군 임시마약류의 정의를 고려할 때 별도로 후단을 신설하여 해당 내용을 명시할 실익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 현행법에 따르면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7일의 기간을 두어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7) 예고임시마약류 중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사례는 1건으로, 예고기간 중 해당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임.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며, 2군 임시 마약류는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임⁸⁾.

따라서, 중추신경계에 대한 작용 여부나 마약류와의 유사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이 가능하며 이외의 물질 등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바, 해당 내용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성은 낮다고 보임.

□ 넷째, 안 제5조의2제4항은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및 재지정의 근거를 삭제하여 임시마약류로 한 번 지정될 경우 계속적으로 임시마약류로 규제되도록 하려는 것인데,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본질이 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⁹⁾ 동안 위해성이 있는 물질을 우선 규제 범위에 포섭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임시적·단계적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시 마약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3년의 지정 기간은 마약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재지정은 해당 물질의 위해 가능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로 전환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적인 장치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통한 유해성 평가, 시행령 개정 등에 최소 1년 6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됨.

□ 따라서, 지정 기간을 폐지할 경우 임시마약류를 일정 기간 내에 마약류로 확정·전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구조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어, 잠정적·한시적 규제인 임시마약류 제도의 법적 취지가 약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지정기간 및 재지정 근거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등을 임시마약류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하게 되므로,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권으로 임시마약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최근 5년간 임시마약류 지정 및 삭제 현황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11월
총 지정 건수		84	95	98	150	130
지정	신규지정	8	21	27	57	11
	재지정	17	37	16	41	2
제외	마약류 전환	36	10	24	-	20
	이성체 삭제 (목록 정비)	-	-	-	5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다섯째, 안 제5조의2제7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조의2제3항 각 호10)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각 호 중 지정 사유(제1호), 명칭(제2호), 군 구분(제3호) 변경 시에는 1개월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려는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2. 임시마약류의 명칭

3.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의 구분

4.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것인데,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먼저, 제5조의2제3항 각호는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단계와 지정 공고 단계에 각각 포함되는 것이나, 안 제5조의2제7항은 해당 변경이 예고된 내용의 변경과 지정 공고된 내용의 변경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의 구조와 조문 간 조응성을 고려할 때, 예고 사항이 아닌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안 제5조의2제3항에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의 최소 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고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긴 1개월 이전부터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은 지정 사유(제1호), 명칭(제2호), 군 구분(제3호) 변경 시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정 사유의 경우 유예기간을 둘 필요성은 크지 않은바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임시마약류 지정 사유 등 변경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최초 지정 공고 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관보에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사항 중에는 벌칙의 수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분류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최초의 지정과 동일한 수준의 공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정 사유 등 변경 시에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모두에 공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대응으로 사용되어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신종 물질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간소화하고, 반복적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반영구적으로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 (대한의사협회) 신종 위해 물질에 빠르게 대응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동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임시마약류 지정 시 14일로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예고 기간동안 진행하도록 변경할 경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특히, 임시마약류에는 의료기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의약품도 포함될 수도 있는데, 짧은 기간 안에 지정이 이루어지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음. 따라서 임시마약류 지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의 절차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4

【참고】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 (2025.11.19. 현재)
-------------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 - 462호** (※ 화학명칭·지정사유 생략)

연번	물질명	1/2군	효력기간
1	ADB-INACA (JSR4Z7QBW9, Adb-fubinaca metabolite M3)	2	'23.5.11. ~'26.5.10.
2	N-Methyl-N-ethyltryptamine (MET)	2	'23.5.26. ~'26.5.25.
3	Δ9-THC-O (Tetrahydrocannabinol acetate)	1	
4	2,3-DCPP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의약품 합성 등) 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1	
5	4-HO-DPT	2	'23.6.15. ~'26.6.14.
6	BZO-4en-POXIZID	2	
7	Flubrotizolam(FANAX)	2	
8	Cumyl-CBMegaclone	2	
9	MDMB-INACA	2	'23.8.24. ~'26.8.23.
10	3-Chlorophenmetrazine (3-CPM)	2	'23.9.1. ~'26.8.31.
11	5F-AB-FUPPYCA	2	
12	5F-PCN(5F-MN-21)	2	
13	ADSB-FUB-187(L6K9PBL5EO, UNII-L6K9PBL5EO)	2	
14	JTE-7-31(UNII-7MM5OX2NX0, 7MM5OX2NX0)	2	
15	LY-2183240	2	'23.11.10. ~'26.11.9.
16	Amfetaminil	2	'23.12.6. ~'26.12.5.
17	Bucinnazine	1	
18	Dezocine	2	
19	Eluxadoline	1	
20	Ezogabine	2	
21	Fospropofol	1	
22	Nabilone	1	
23	1D-LSD	1	'23.12.21. ~'26.12.20.
24	A-FUBIATA	2	
25	A-PONASA	2	
26	Desalkylgidazepam	2	
27	Gidazepam	2	
28	HHCP	1	
29	3-Methylmethamphetamine(Metaphedrine, 3-MeA, 3-MMA)	2	'24.1.5.~ '27.1.4.
30	NMDMSB	2	'24.3.7.~ '27.3.6.
31	4-EA-NBOMe	2	
32	t-BOC-methamphetamine	2	'24.5.17.~'27 .5.16.
33	MiPLA	1	
34	Chlorphentermine	2	'24.7.11.~'27 .5.16.
35	Ethyleneoxynitazene	1	'24.9.3.~ '27.5.16.
36	Metodesnitazene (metazene)	1	
37	Flunitazene	1	
38	N-Desethyl etonitazene	1	

연번	물질명	1/2군	효력기간
39	N-Desethyl protonitazene	1	
40	Etomethazene	1	
41	EG-018	2	
42	MDA-19	2	
43	5F-MDA-19	2	
44	2F-QMPSB	2	
45	Gamma-butyrolactone(GBL)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등 산업 및 학술연구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1	
46	ADB-FUBIATA	2	
47	CUMYL-CH-MEGACLONE	2	
48	5C-MDA-19 (BZO-POXIZID, pentyl MDA-19)	2	
49	ADB-BRINACA(5F-ADB-033)	2	
50	Troparil(Win-32065-2, Win-32,065-2,β-CPT)	2	
51	25I-NB34MD(NB34MD-2C-I)	2	
52	4-AcO-MiPT (Mipracetin)	2	
53	Mephenmetrazine(4-Methylphenmetrazine, 4-MPM, PAL-747)	2	
54	DF-MDBP(DB-MDBP)	2	
55	3,4-MDPM(3,4-Methylenedioxyphenmetrazine)	2	
56	Hexahydrocannabinol(HHC)류 ※ 화학명칭에 기재된 11종에 대해서만 적용	2	'24.10.18.~'2 7.5.16.
57	Tetrahydrocannabinol(THC)류 ※ 화학명칭에 기재된 13종에 대해서만 적용	2	
58	Cannabidiol(CBD)류 ※ 화학명칭에 기재된 2종에 대해서만 적용	2	
59	Cannabigerol(CBG)류 ※ 화학명칭에 기재된 3종에 대해서만 적용	2	
60	MDMB-ICA	2	'24.11.12.~'2 7.5.16.
61	A-PBITMO	2	'24.12.16.~'2 7.5.16.
62	2C-T	2	
63	4'-Chloro deschloroalprazolam	2	
64	N-pyrrolidiny-3,4-DMA	2	
65	2-Bromomescaline	2	
66	2,6-Dibromomescaline	2	
67	ADB-5'Br-PINACA	2	'25.1.22.~'28 .1.21.
68	4-Benzo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	2	'25.2.14.~'28 .1.21.
69	ALEPH-4	2	'25.4.6.~ '28.3.31.
70	Isoproscaline	2	'25.5.1.~ '28.3.31.
71	Mesembrine	2	'25.6.16.~ '28.3.31.
72	Methylpropyltryptamine (MPT)	2	'25.6.16.~ '28.3.31.
73	N-Ethyl-2C-B	2	'25.8.5.~ '28.3.31.
74	flunitrazolam	2	'25.8.14.~ '28.3.31.
75	1T-AL-LAD	2	'25.8.27

연번	물질명	1/2군	효력기간
76	1V-LSD	1	~'28.3.31.
77	CH-PIATA	2	
78	Propoxate	2	'25.9.05 ~'28.3.31.
79	Metomidate	2	
80	Isopropoxate	2	
81	sec-butomidate	2	
82	Butomidate	2	
83	TF-etomidate	2	
84	4F-etomidate	2	
85	Bentazepam	2	
86	Methylclonazepam	2	
87	Thionordiazepam	2	
88	isobutomidate	2	'25.9.15 ~'28.3.31.
89	2,6-diCl-3F-etomidate	2	
90	ADB-5'Br-BUTINACA	2	'25.10.10 ~'28.10.09.
91	MDMB-5Br-INACA	2	
92	LSZ(Lysergic acid 2,4-dimethylazetidide, LA-SS-Az)	1	
93	5F-Cumyl-Pegaclone (5F-SGT-151, SGT-269, 5-Fluoro cumyl-pegaclone, 5-Fluoro SGT-151)	1	
94	Phenaridine (Fenaridin, 2,5-Dimethylfentanyl)	1	
95	NBoc-DMT	2	'25.10.20 ~'28.10.09.
96	1Bz-LSD	2	
97	Fluetonitazene	1	
98	Fluetonitazepyne	1	
99	N-Pyrrolidino Isotonitazene	1	
100	Nitazene	1	
101	4-PrO-DMT	1	'25.11.19. ~'28.10.09.
102	dihydro-7-Hydroxymitragynine(MGM -15)	1	
103	6-monoacetylmorphine (6-MAM, 6-acetyl morphine, 6-AM, 6-O-Acetylmorphine)	1	
104	5F-MDMB-P7AICA	1	
105	U-49900	1	
106	1B-LSD	1	
107	1cP-AL-LAD	1	
108	1T-LSD	1	
109	4-AcO-EPT	1	
110	alkyl nitrite(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 화학명칭에 기재된 8종에 대해서만 적용. 다만,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1	
111	Mephedrene	1	
112	α-D2PV (alpha-D2PV, A-D2PV, α-Pyrrolidino-2-phenylacetophenone)	1	
113	1P-LSD (1-Propionyl-lysergic acid diethylamide, 1P-LAD, 1-propionyl LSD)	1	
114	4-AcO-MET(4-Acetoxy-MET)	1	
115	4-AcO-DALT(4-Acetoxy-DALT, 4-Acetyloxy-N,N-diallyltryptamine, Dalcetin)	1	
116	4-AcO-DET(4-Acetoxy-DET, Ethacetin, Ethylacybin)	1	

연번	물질명	1/2군	효력기간
117	4-AcO-DMT(Psilacetin, O-Acetylpsilocin, 4-Acetoxy-DMT)	1	
118	4-OH-MET(methylcybin, metocin)	1	
119	4-OH-MiPT(4-HO-MiPT, 4-hydroxy MIPT)	1	
120	5-MeO-2-TMT	1	
121	Mephtramine(MTTA)	1	
122	CUMYL-5F-P7AICA (5F-CUMYL-P7AICA, 5FCUMYLP7AICA, 5-Fluorocumyl-p7aica, SGT-263)	1	
123	3-Fluorophenmetrazine(3-FPM)	1	
124	1S-LSD	1	
125	Phenpromethamine	1	
126	1cP-MiPLA	1	
127	Cumyl-4CN-B7AICA	1	
128	ABP-700 ※ 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준비행위(임상시험 등) 및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2	
129	1cP-LSD	1	
130	ALD-52 (1-Acetyl-LSD, 1A-LSD, 1A-LAD, 1-Acetyllysergic acid diethylamide, N-acetyl-LSD)	1	